

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4조의4에 따라 「(국토지리정보원) 용역적격심사 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(2026. 9. 3. ~ 9. 23.)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.

2026년 10월 13일

국토지리정보원장

「(국토지리정보원) 용역적격심사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처리 결과

□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

주요 의견	제출기관	검토결과
■ '사업수행기술자 기본측량 수행경력 평가 추가는 업계 현실을 고려할 필요 - 사업수행기술자에 대한 경력평가는 측량산업의 신규 인력 진입장벽을 높혀 측량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 -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측량업계의 사정상 일정기간 이상의 기본측량 수행실적을 갖춘 인력 양성·확보 곤란 ■ 따라서 기술자에 대한 경력평가는 현재와 같이 사업책임기술자에 한해 적용할 필요	○○코리아(주) 등 30개	《수 용》 ■ 개정안은 측량업의 업체 규모, 인력 수급실태 등을 고려 시 사업자의 경영 부담 및 특혜 시비 등 발생 우려 ■ 또한 우수 사업자 선정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수단이 고려 될 수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은 방안은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
■ 측량업계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술자의 기본측량 수행경력 평가기준을 개정안보다 완화할 필요	(주)대한○○ 기술단 등 15개	《불수용》 ■ '사업수행기술자 기본측량 수행 경력 평가' 도입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